

제328회 임시회  
2014. 3. 20.(목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  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심 사 보 고 서

2014. 3. 20.(목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3월 12일

-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강호동)

가. 제안이유

○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은·괴산 소방서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기구조정

○ 보은·괴산소방서 신설 (안 별표 2)

- 소방서의 명칭, 위치, 관할구역 정비

명 칭	위 치	관할구역
충청북도보은소방서	보은군 관내	보은군 일원
충청북도괴산소방서	괴산군 관내	괴산군 일원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은·괴산소방서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3월 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은·괴산 소방서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<기구 조정>

- 보은·괴산소방서 신설 (안 별표 2)
  - 소방서의 명칭, 위치, 관할구역 정비

명칭	위치	관할구역
충청북도보은소방서	보은군 관내	보은군 일원
충청북도괴산소방서	괴산군 관내	괴산군 일원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(제29조제2항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상당구, 청원군 중 내수읍, 북이면, 남일면, 가덕면, 문의면, 낭성면, 미원면, 오창읍 일원
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흥덕구, 청원군 중 오송읍, 옥산면, 강내면, 남이면, 현도면 일원
충청북도 충주소방서	충주시 관 내	충주시 일원
충청북도 제천소방서	제천시 관 내	제천시, 단양군 일원
<u>충청북도 보은소방서</u>	<u>보은군 관 내</u>	<u>보은군 일원</u>
충청북도 옥천소방서	옥천군 관 내	옥천군 일원
충청북도 영동소방서	영동군 관 내	영동군 일원
충청북도 증평소방서	증평군 관 내	증평군 일원
충청북도 진천소방서	진천군 관 내	진천군 일원
<u>충청북도 괴산소방서</u>	<u>괴산군 관 내</u>	<u>괴산군 일원</u>
충청북도 음성소방서	음성군 관 내	음성군 일원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

제5조(설치 등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.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#### ② (생략)

제8조(119안전센터 등)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(消防艇隊)를 둘 수 있다.

#### ② ~ ③ (생략)